

 <p>거창군 Geochang County</p> <p>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p>	<h1 style="font-size: 4em; margin: 0;">공 보</h1> <p style="font-size: 1.5em; margin: 0;">제925호 2023. 8. 16.(수)</p>	
---	---	---

선 결	기관의 장

훈 령

거창군 훈령 제469호 거창군 공무원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2

고 시

거창군 고시 제2023-103호 도로명주소 고시 5

공 고

거창군 공고 제2023-1243호 「거창군 자율방범대·외국인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거창군 공고 제2023-1248호 「거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5

거창군 공고 제2023-1250호 소하천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 구축사업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1

회 략									
------------	--	--	--	--	--	--	--	--	--

발 행 : 거창군 편 집 : 기획예산담당관 (☎055-940-3043)
 ※ 거창군 공보는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거창군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거 창 군 수

서 명 생 략

2023년 8월 16일

거창군 훈령 제469호

거창군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거창군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무직 등 근로자 정원표

단위: 명, () 시간제공무직

구 분	총 계	공무직근로자											(사업지침)공무직근로자				청원 경찰
		소계	행정 사무원	현장 근로원	식당 종사원	CCTV 관제원	의료급여 관리사	의료관련 사무원	통합사례 관리사	아동보호 전문요원	청소년 상담사	농기계 수리원	소계	아동 복지사	청소년 상담사	청소년 지도사	
계	157(2)	123	51	23	4	12	2	12	9	1	3	6	18(2)	7	4(2)	7	16
기획예산담당관	2	2		2													
행정과	8	5	2		3												3
인구교육과	22(2)	10	7								3		11(2)		4(2)	7	1
민원소통과	1	1	1														
재무과	5	5	5														
경제기업과	2	2	2														
문화관광과	11	8	7	1													3
복지정책과	11	11	2				2		7								
행복나눔과	13	6	3						2	1			7	7			
안전총괄과	14	14	2			12											
산림과	5	4	3	1													1
환경과	2	2	2														
건설교통과	15	15	3	12													
의회사무과	2	2	2														
농업기술센터	18	18	9	3								5 6					
보건소	14	13			1			12									1
수도사업소	7	3		3													4
체육시설사업소	1																1
거창사건사업소	3	1	1														2
거창읍	1	1		1													

거창군 공무원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1. 제안이유

조직개편(2022. 12. 28.)에 따른 부서 명칭을 현행화하고 부서 간 정원 조정을 통해 탄력적 인력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부서 명칭 현행화(안 별표 1)

- 1) 경제교통과 ⇒ 경제기업과
- 2) 건설과 ⇒ 건설교통과

나. 부서 정원 조정(안 별표 1)

- 1) 행정과: (행정사무원) 3 ⇒ 2
- 2) 경제기업과: (행정사무원) 4 ⇒ 2
- 3) 건설교통과: (행정사무원) 1 ⇒ 3
- 4)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수리원) 5 ⇒ 6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8. 16.

거창군수

○ 도로명주소 고시대상

- 건물번호 부여 :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용암2길 40 등 2건
- 건물번호 변경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당동1길 399-1 등 2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 (변경·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055-940-3313)로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공고 제2023-1243호

「거창군 자율방범대·외국인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거창군 자율방범대·외국인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8월 11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자율방범대·외국인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지역사회 민생치안 확보에 기여하기 위하여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3. 4. 27. 시행)되었고,
- 위 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율방범대의 활동증진 및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함

- 1) 현행 : 거창군 자율방범대·외국인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 2) 변경 : 거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나. 법령 위임사항을 정하는 위임조례임을 명확히 함(안 제1조)

다. 위임된 사항을 정함(안 제2조~제5조)

- 1) 군수의 책무, 지원절차, 지원방법, 지원중단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55-940-3169), 이메일(fbghtjs@korea.kr)

라. 제출기한 : 2023. 8. 16.(수) 18:00까지 도달

마. 제출주소 : (우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행정과)

바. 문의전화 : 055-940-3183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거창군 자율방범대·외국인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1부.

3. 관련법령 1부. 끝.

[붙임 1]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 「거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붙임 2]

거창군 자율방범대·외국인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자율방범대·외국인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거창군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지원절차) 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및 제3조제2항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정관
3. 지원금 정산서
4. 지출결의서
5. 방법일지

6. 방법순찰 등 활동사진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거창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율방범대 또는 연합대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제5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 또는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자율방범대 또는 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4. 27.] [법률 제18848호, 2022. 4. 26., 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제4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대원”이란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율방범대장”이란 자율방범대원 중 자율방범대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신고) ① 제3조에 따라 자율방범대를 조직하려는 사람은 명칭, 활동구역, 대표자 및 구성원의 성명 등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자율방범대는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해산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자율방범활동) 자율방범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한다.

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보호
3. 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지구대장·파출소장(이하 “시·도경찰청장등”이라 한다)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4.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장·면장·동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제12조(중앙회·연합회·연합대 설립 등) ①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전국 단위의 자율방범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시·도자율방범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및 시·군·구에 시·군·구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중앙회는 경찰청장에게, 연합회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연합대는 경찰서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설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중앙회, 연합회 및 연합대(이하 “중앙회등”이라 한다)의 조직·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경비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와 중앙회등의 활동에 필요한 복장·장비의 구입, 교육·훈련, 포상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방범대가 자율방범활동이나 제10조에 따른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법률 제18848호, 2022. 4.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율방범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중앙회, 연합회 또는 연합대가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4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자율방범대, 중앙회, 연합회 또는 연합대로 본다.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4. 27.] [대통령령 제33427호, 2023. 4. 25.제정]

제2조(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자율방범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위한 복장·장비·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2.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방법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그 밖에 경찰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조(연합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합대의 활동을 위한 차량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2. 연합대의 활동을 위한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그 밖에 경찰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합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4. 11.] [법률 제19333호, 2023. 4. 11., 일부개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집행 등 그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이 법을 적용할 때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 또는 교육비 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감”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제12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한다.

□ 「거창군 자율방범대·외국인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에서 자율적으로 지역 방범 치 순찰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가 주민생활안전, 범죄예방을 위해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방범대”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지를 둔 방법의식이 투철한 해당 지역 주민으로 구성하여 방법 순찰 및 지역안전예방 활동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주민 조직(여성자율방범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란 각 읍·면의 자율방범대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3. “외국인 명예경찰대”란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지역사회 질서유지 및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거창경찰서에 등록되어 방법활동을 1년 이상 수행해 온 자율방범대와 연합회, 외국인 명예경찰대로 한다.

제4조(지원) ① 군수는 원활한 자율방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방법활동에 필요한 경비
 2. 방법초소 개선사업
 3. 체육대회 등 사기진작을 위한 최소경비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
-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활동에 관하여 시정 요구와 지도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연중 활동실적을 평가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2021.9.29.>

제7조(교육) 군수는 필요시 거창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대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거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8월 16일
거창군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2. 제정이유
 - 가.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개최실적 저조
 - 나.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 협의 등 주요기능 중복
3. 주요내용
 - 가. 위원회 비상설화 조항 신설(안 제3조제5항)
 - 나.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 임기 삭제(안 제4조·제5조)
4. 제정조례안 : 붙임
5. 예고기간 : 2023. 8. 16. ~ 9. 5.
6. 의견제출
 - 가. 제출기한 : 2023. 9. 5.(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하는 곳 : 거창군청 안전총괄과

- 1) 주소 : (우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안전총괄과 안전관리담당)
- 2) 전화 055-940-3632, 팩스 055-940-3629, 이메일 tmel0203@korea.kr

7.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안전총괄과 안전관리담당

【☎(055)940-36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1부.
2. 「거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1부.
3. 관계법령 1부. 끝.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조 례 명 : 「거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회는 안전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군수 2.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사람 <p>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 <p>가.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p> <p>나.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p> <p>다.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p> <p>라. 그 밖에 원활한 민관협력관계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p> <p>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제4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p>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p> <p>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군수 2.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사람 <p>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 <p>가.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p> <p>나.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p> <p>다.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p> <p>라. 그 밖에 원활한 민관협력관계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p> <p>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p> <p>⑤ 위원회는 안전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p> <p><삭 제></p> <p><삭 제></p>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중앙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역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③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역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소하천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 구축사업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소하천 재해 예방 및 각종 정보 수집을 위한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따른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 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8월 14일

거 창 군 수

1. 행정예고명 : 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사업 CCTV 설치
2. 시 행 청 : 경상남도 거창군청
3. 행정예고기간 : 2023. 8. 14. ~ 2023. 9. 4.(21일간)
4. 의견제출기간 : 2023. 8. 14. ~ 2023. 9. 4.(21일간)
5. 행정예고(공고)방법 : 거창군청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
6.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7. 주요내용

- 설치목적 : 소하천 재해 예방을 위한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따른 CCTV 설치
-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촬영/ 실시간
- 설치위치

구 축 장 소	설치 대수	촬영 시간	운 영 기 관	비고
거창읍 송정리 474-1번지 일원(운정 소하천)	2	24시간	거창군청 (건설과 하천담당)	
거창읍 동변리 399-2번지 일원(죽동 소하천)	2	24시간	거창군청 (건설과 하천담당)	
주상면 도평리 486-3번지 일원(도평 소하천)	2	24시간	거창군청 (건설과 하천담당)	
주상면 거거리 956-8번지 일원(원거리 1천)	2	24시간	거창군청 (건설과 하천담당)	
가조면 기리 1545-4번지 일원(음기천)	2	24시간	거창군청 (건설과 하천담당)	

8.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거창군청 건설과 하천담당으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필요사항 등

다. 제출방법

- 우편 : (우)50132
- 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건설과(하천담당)
- 전화 : 055-940-3644
- 팩스 : 055-940-3529

라.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마. 우편으로 의견제출시 기한 내 도달 기준임(공고기간 내 도달)

사. 공청회 개최계획 : 없음

행정 예고 의견제출서

1. 행정예고 내용		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사업 CCTV 설치		
2. 당사자	성명(명칭)		생년월일	
	주 소			
3. 의 견				
4. 기 타				
<p>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3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의견 제출인 :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p> <p>거창군수 귀하</p>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